

안전보건관리 유의서

1. 적용대상

본 문서는 공고번호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제2023-1호 입찰건명 「[수의계약공고] 한림대의료원(강남성심병원) 본관2동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보수업체(AS 상주) 선정」에 적용한다.

2. 적격 수급업체 평가 및 선정

가. 실시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나. 제출방법

- 1) 제출기한 : `23.04.18(화) ~ `23.04.24(월)
(마감당일 14:00까지 도착분)
- 2)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전기실(이동건 기사장)
(본관2동 지하1층 전기실)

다. 제출서류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적격 수급업체 선정 기준 참고
- 2) 산업재해를 확인서 1부.(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출력)

3.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도급공사 안전관리

- 1) 담당자는 수급업체에 도급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의 도급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한다. 또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하거나, 용도외 사용한 내역은 정산하여 감할 수 있다.
- 3) 위험 기계·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본원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업체에 사전조사 결과 및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 및 현장점검 시 확인할 수 있다.
- 5)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지도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협의체

- 1) 안전보건협의체는 총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및 상주 수급인에 대해 구성·운영하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도 위험성을 고려하여 소관 수급인과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3)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병원장)가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4) 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 수급인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수급인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다. 안전보건점검

1) 2일 1회 병원은 안전보건순회점검을 실시한다.

2) 분기 1회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수급사의 현장관리자 및 직원 1명을 반드시 참석 시킨다.

3) 수급사는 발주처의 안전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는 시정하여야 한다.

4) 본원 안전관리자는 발주공사 단계별(발주·계약, 착공 전, 공사 중) 안전관리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안전보건교육

1) 공사 기간 중 매월 2시간 이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건설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작업 전 8시간 이상의 채용시교육을 진행하고, 1개월 미만으로 작업하는 건설 근로자의 경우 주 단위로 1시간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 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3)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해야 한다.

4. 일반작업 유의사항

가. 작업장 내에서 행동

- 1) 바닥에 위험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흘리지 않는다.
- 2) 공구 등 기타 물품을 던지고 받는 행위를 금한다.
- 3) 각종 표지판과 안전지침서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 4) 공사 종료 시 까지 청소원을 상시 배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한다.
- 5) 인화성, 발화성, 폭발성 기타 위험물질이나 유독물질은 용기에 내용물을 표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
- 6) 소화기, 소화전, 출입구, 비상구 및 분배전반 위치 부근에는 물품을 두지 말아야 하며, 벽이나 창문, 기둥 등에 물품을 기대어 세워 두어서는 아니 된다.

나. 통로 및 통행

- 1) 통로 바닥은 평탄하여야 한다.
- 2) 통로 상에는 구멍, 하수구의 뚜껑, 맨홀, 볼트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돌출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의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 4) 통로 상에는 어떤 것도 놓는 것을 금지한다.
- 5) 지정된 장소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 6) 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으며, 특히 사다리 이동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이동한다.
- 7) 운반대차 등 기타 운반구를 타는 행동을 금지한다.
- 8) 가동 중인 기계 하부나 제품 및 적재된 롤 사이 또는 운반중인 크레인 밑을 통행하지 말 것

다. 낙하물 등의 예방

- 1) 작업장의 바닥, 통로, 도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복장 및 보호구 착용

- 1) 소매단추 및 앞 단추는 잠그고, 옷자락을 늘어뜨리지 않는다.
- 2) 복장은 항상 청결하고 훼손된 곳은 보수하여 착용한다.
- 3)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때에는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 이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지 못한다.
- 4) 위험작업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한다.
- 5) 미분, 칩, 기타 비산물이 발생하는 절단, 연삭, 기계가공 등의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 6) 화공약품 취급 작업 시에는 보안경, 내산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한다.
- 7)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미스트, 흡 또는 분진 발생장소에는 방독이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 8) 85(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 9) 칩, 증기, 유해물질 등의 비산으로 얼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수행 시에는 보안면 등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라. 안전보건게시물 관리

- 1) 작업장소 내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해야 한다.
- 2) 위험장소에는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5. 전기작업 유의사항

가.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

- 1) 면허를 필요로 하는 전기작업은 면허소지자 외에 작업을 금한다.
- 2) 전기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본원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3) 전기장치에 스파크나 연기가 나면 전기를 끄고 보고한다.
- 4) 전선 또는 전기 기구에 물건을 걸어두지 않는다.
- 5) 활선작업 시에는 감독자를 배치하고, 2인 이상이 작업한다.
- 6)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 부근이나 그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기에 안전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원내 차단기나 안전 스위치를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 8)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전원을 차단하여 둔다.

나. 전기작업에 관한 사항

- 1) 모든 전기작업 시에는 전격(감전)에 대한 보호구, 접지 등 감전사고예방 방호조치가 확보되도록 한다.
- 2) 활선작업 시 또는 정전작업 중 타인이 전원 스위치를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치에는 '조작금지'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한다.
- 3) 임시배선은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연결 시에는 연결부를 절연 테이프로 감아둘 것
- 4) 전기 기구류는 전원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5) 비오는 날에는 옥외에서 전기작업을 하지 않는다.
- 6) 정전작업 시에는 전로의 개로 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 7) 정전작업 시에는 단락 접지기구를 사용하여 단락 접지한다.

6. 기계안전 유의사항

가. 기계작업에 관한 사항

- 1) 본인담당 이외의 기계는 손을 대지 않는다.
- 2) 기계의 가동은 각 작업자의 위치와 안전장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가동한다.
- 3) 정전이 되면 우선 스위치를 내린다.
- 4) 작동하는 기계는 정비작업을 하지 않는다.
- 5) 가동 중인 기계는 점검 및 청소하지 않는다. 정지 시에도 청소는 브러시나 기타 치구를 사용한다.
- 6) 기계기구 등의 수리, 정비 등의 작업 시에는 수리 혹은 정비 중 등의 표지판을 기계 조작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 7) 회전체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 8) 비회전체에 가공물을 물려 작업하는 데에는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 9) 비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기계의 부속기구 등을 정해진 위치에 둔다.

나. 공구사용에 관한 사항

- 1) 공구를 전달할 때 던지거나 밀지 않는다.
- 2) 사용 후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 둔다.
- 3) 끝이 예리한 수공구는 반드시 덮개나 칼집에 넣어서 보관 이동한다.
- 4) 파편이 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 5) 각 수공구는 일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6) 올바른 공구를 사용하고, 임시적인 공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사항

- 1) 운반할 물건의 크기와 무게를 살펴보고 형상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을 택한다.
- 2) 작업할 때는 규정에 맞는 작업복 및 보호구를 몸에 밀착되게 착용한다.
- 3) 운반중량은 조건, 화물의 형상, 성별, 연령 등 조건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한다.
- 4) 중량물을 잡는 방법 및 자세와 순서를 충분히 훈련하여 몸에 배도록 한다.
- 5) 혼자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 2인 이상이나 운반보조기구를 활용한다.
- 6) 여러 명이 운반할 경우에는 작업환경에 적절한 신호방법을 지정 및 준수한다.

7. 유해위험물질 유의사항

가. 유해물질 유의사항

- 1) 유해물질은 정해진 장소와 용기에 격납하여야 한다.
- 2) 유해물질은 지정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3) 관계자 이외 취급 작업장 출입을 금한다.
- 4) 작업장 내에서는 금연 금식을 한다.

나. 위험물질 저장소 유의사항

- 1) 저장소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 취급을 엄금한다.
- 2) 취급시 용기의 전도·전락, 충격을 피한다.
- 3)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4) 허가량 이상 저장하지 않는다.

다.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사항

- 1) MSDS를 구비하여 위험물품을 처리, 운송, 사용하는 근거가 되도록 한다.
- 2) 보호구를 준비한다.
- 3) 원내에서 폐기처분하지 않는다.
- 4) 국부 지역에 누출 시 경고 표지와 지역 내 출입금지 조치하며 신속히 본원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5) 광역 지역에 누출 시 신속히 본원 담당자에게 전화연락 하여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는다.
- 6) 위험정도가 경미하면 보호구 착용 후 비상조치 한다.

8. 화재예방 유의사항

- 1) 금연구역 내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2) 가연성 쓰레기 등은 금속용기에 모아 버려야 하며, 보관 시 뚜껑을 덮을 것
- 3) 소화기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용 시에는 보충한다.
- 4) 소방호스와 소화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5) 화기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화상태를 확인한다.
- 6) 하수구에는 절대로 유류를 버리지 않는다.
- 7) 페인트 작업시에는 특히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 8) 사무실 등에 자리를 비울 때에는 전원을 끈다.
- 9) 승인되지 않은 전열기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 시 본원 전기실 승인신청서를 제출 한 후 반입하여 사용한다.
- 10) 화기를 취급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 후 진행 하여야 한다.